|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 수정과 취소 관리방법**  세관총서령 제220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 수정과 취소 관리방법>이 2014년 2월 13일 세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발표하며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5년12월 30일에 세관총서령 제143호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 세무신고서 수정과 취소 관리방법＞은 동시에 페지한다.  서장  2014년 3월 13일  **제１조**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의　수정과　취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입화물　수령인과 선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고행위를 규범화하며 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세관법>으로 지칭)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출입화물의 수령인과 선적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로 통칭)이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를 수정 또는 취소하고 세관이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에 대해 수정 또는 취소를 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세관이 수출입화물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세관신고서 증명 및 그 내용을 수정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하며 규정에 부합되는 상황에서만 수정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를 수정 또는 취소한 후, 종이　세관신고서와　전자데이터　세관신고서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한다．  **제４조**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의　수정　또는　취소는　수정우선의　원칙을　준수하며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５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최초에　신고를　접수한　세관에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의　수정　또는　취소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나,　세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１)수출화물을　반출한　후　선적, 적재 등 원인으로 원래화물의 부분 또는 전부가 적재거절되고 운수공구가 변경되는 경우  (２)수출입화물이 적재, 운수, 저장과정에서 과부족 요인이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으로　멸실, 단기손해 등을 초래하여 원래 신고한 데이터와 실제화물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３)세금환급, 세금보충, 세관사무 담보 등 기타세관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세관신고서 데이터를 수정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4)무역관습에 근거하여 사전에 잠식적인 가격으로　거래，실지결제를　할　때　상검품질　인증　또는　국제시장　실지가격의　지불방식으로　신고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５)이미　신고한　수입화물로서　직접　반송수속을　할　때　원수입화물　세관신고서를　수정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  (６)계산기，인터넷　시스템　등　기술원인으로　전자데이터신고에　착오가 있을 경우  **제６조**　본　방법　제５조규정에　부합될　경우,　당사자는　세관에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　수정／취소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１)제５조제１항의　상황에　부합될　때　셧아웃，운수도구를　변경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２)제５조제２항의　상황에　부합될　때　상검기구　또는　관련　부문에서　발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３)제５조제３항의　상황에　부합될　때　세관의　의견을　써넣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４)제５조제４항의　상황에　부합될　경우,　무역실제　상황을　모두　반영하는　인보이스，계약서，인수증，패킹리스트 등　서류를　제출하고　사실대로 화물매매에 관한 지불증빙, 신고가격이 진실하고 정확한 기타 상업서류, 서면자료와 전자 데이터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5)제5조 제5항의 상황에 부합될 경우, <수입화물 직접 반송표> 또는 <수입화물 직접 반송 명령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제5조 제6항의 상황에 부합될 경우, 계산기, 인터넷 시스템의 작동을 관리하는 측에서 설명자료를 발급하여야 한다.  (7)기타 증명자료  당사자는 세관에 본 조항 제1조 규정에 부합함과 동시에 완비하고 유효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세관은 지체없이 수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 세무신고인원의 조작 또는 수식 착오로 신고내용을 수정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세관에 <수출입화물 세무신고서 수정/취소표>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화물의 실제상황을 증명하는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송장 또는 적화목록　등　관련　서류，증명문서  (２) 상세한　상황　설명  (３) 기타　증명자료．  세관에서　세무신고인원이　세관감독 행위를　회피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세관신고서를　수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수정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관이　당사자에게　적시에　알려야　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한다．  세무신고인원의　조작　또는　수식의　착오에　대하여는　세관이　세무신고점수기록심사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８조**　세관이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에서　수정　또는　취소할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아래의　방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당사자에게　수정　또는　취소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１)전자데이터　세관신고서를　반송하면서　수정의　원인과　요구를　상세히　설명하고,　당사자는　세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한다．동시에　세관신고서의　기타내용은 변경하지　못한다．  (２)당사자에게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　수정／취소　확인서＞를　제작하여　발급함과　동시에　수정　또는　취소의　내용을　통지한다．당사자는　５일 내에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의　수정　또는　취소내용을　확인하고　세관신고서의　수정　또는　취소를　완료한다．  **제９조**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처했을 경우　세관이　직접　상응한　전자데이터　세관신고서를　취소하여야　한다．  (１)세관이　전자데이터　세관신고서를　수정하라고　발송하였지만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내에　다시　발송하지　않을　때  (２)세관이　전자데이터　세관신고서를 심사결정한 후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내에 종이 세관신고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3)수출화물 신고후 규정한 기한내에 세관 감독,관리장소에 운송되지 않았을 때  (4) 세관총서가 규정한 기타의 상황.  **제10조** 세관이 밀수혐의 또는 세관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수출입화물에 대해 감시, 규제, 검사의 결정을 이미 내렸을 경우, 관련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는 세관신고서 및 그 전자데이터를 수정, 취소하지 못한다.  **제11조** 이미 세관신고서 증명을 발급받은 수출입화물에 대해 당사자가 세관신고서의 수정 또는 취소수속을 진행할 때에는 세관에 세관신고서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의 수정 또는 취소로 말미암아 수출입허가 증명문건을 변경, 재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세관에 수출입허가증명문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출입비안목록의 수정, 취소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4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밀수행위, 세관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기타 <세관법>을 위반한 행위가 구성될 경우, 세관이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가 구성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5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6조** 본 방법은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12월 30일 세관총서령 제143호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 수정과 취소 관리방법>은 동시에 페지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  **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和撤销管理办法**  海关总署令第220号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和撤销管理办法》已于2014年2月13日经海关总署署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2005年12月30日以海关总署令第143号公布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和撤销管理办法》同时废止。    署 长  2014年3月13日  **第一条** 为了加强对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和撤销的管理，规范进出口货物收发货人或者其代理人的申报行为，保护其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以下简称《海关法》）制定本办法。  **第二条** 进出口货物收发货人或者其代理人（以下统称当事人）修改或者撤销进出口货物报关单，以及海关要求对进出口货物报关单进行修改或者撤销的，适用本办法。  **第三条** 海关接受进出口货物申报后，报关单证及其内容不得修改或者撤销；符合规定情形的，可以修改或者撤销。  　　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或者撤销后，纸质报关单和电子数据报关单应当一致。  **第四条** 进出口货物报关单的修改或者撤销，应当遵循修改优先原则；确实不能修改的，予以撤销。  **第五条** 有以下情形之一的，当事人可以向原接受申报的海关办理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或者撤销手续，海关另有规定的除外：  　　（一）出口货物放行后，由于装运、配载等原因造成原申报货物部分或者全部退关、变更运输工具的；  　　（二）进出口货物在装载、运输、存储过程中发生溢短装，或者由于不可抗力造成灭失、短损等，导致原申报数据与实际货物不符的；  　　（三）由于办理退补税、海关事务担保等其他海关手续而需要修改或者撤销报关单数据的；  　　（四）根据贸易惯例先行采用暂时价格成交、实际结算时按商检品质认定或者国际市场实际价格付款方式需要修改申报内容的；  　　（五）已申报进口货物办理直接退运手续，需要修改或者撤销原进口货物报关单的；  　　（六）由于计算机、网络系统等技术原因导致电子数据申报错误的。  **第六条** 符合本办法第五条规定的，当事人应当向海关提交《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撤销表》和下列材料：  　　（一）符合第五条第（一）项情形的，应当提交退关、变更运输工具证明材料；  　　（二）符合第五条第（二）项情形的，应当提交商检机构或者相关部门出具的证明材料；  　　（三）符合第五条第（三）项情形的，应当提交签注海关意见的相关材料；  　　（四）符合第五条第（四）项情形的，应当提交全面反映贸易实际状况的发票、合同、提单、装箱单等单证，并如实提供与货物买卖有关的支付凭证　　以及证明申报价格真实、准确的其他商业单证、书面资料和电子数据；  　　（五）符合第五条第（五）项情形的，应当提交《进口货物直接退运表》或者《责令进口货物直接退运通知书》；  　　（六）符合第五条第（六）项情形的，应当提交计算机、网络系统运行管理方出具的说明材料；  　　（七）其他证明材料。  　　当事人向海关提交材料符合本条第一款规定，并且齐全、有效的，海关应当及时进行修改或者撤销。  **第七条** 由于报关人员操作或者书写失误造成申报内容需要修改或者撤销的，当事人应当向海关提交《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撤销表》和下列材料：  　　（一）可以证明进出口货物实际情况的合同、发票、装箱单、提运单或者载货清单等相关单证、证明文书；  　　（二）详细情况说明；  　　（三）其他证明材料。  　　海关未发现报关人员存在逃避海关监管行为的，可以修改或者撤销报关单。不予修改或者撤销的，海关应当及时通知当事人，并且说明理由。  　　对于报关人员的操作或者书写失误，海关依照报关记分考核办法的相关规定处理。  **第八条** 海关发现进出口货物报关单需要修改或者撤销，可以采取以下方式主动要求当事人修改或者撤销：  　　（一）将电子数据报关单退回，并详细说明修改的原因和要求，当事人应当按照海关要求进行修改后重新提交，不得对报关单其他内容进行变更；  　　（二）向当事人制发《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撤销确认书》，通知当事人要求修改或者撤销的内容，当事人应当在5日内对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或者撤销的内容进行确认，确认后海关完成对报关单的修改或者撤销。  **第九条** 除不可抗力外，当事人有以下情形之一的，海关可以直接撤销相应的电子数据报关单：  　　（一）海关将电子数据报关单退回修改，当事人未在规定期限内重新发送的；  　　（二）海关审结电子数据报关单后，当事人未在规定期限内递交纸质报关单的；  　　（三）出口货物申报后未在规定期限内运抵海关监管场所的；  　　（四）海关总署规定的其他情形。  **第十条** 海关已经决定布控、查验以及涉嫌走私或者违反海关监管规定的进出口货物，在办结相关手续前不得修改或者撤销报关单及其电子数据。  **第十一条** 已签发报关单证明联的进出口货物，当事人办理报关单修改或者撤销手续时应当向海关交回报关单证明联。  **第十二条** 由于修改或者撤销进出口货物报关单导致需要变更、补办进出口许可证件的，当事人应当向海关提交相应的进出口许可证件。  **第十三条** 进出境备案清单的修改、撤销，参照本办法执行。  **第十四条** 违反本办法，构成走私行为、违反海关监管规定行为或者其他违反《海关法》行为的，由海关依照《海关法》和《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有关规定予以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五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十六条**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2005年12月30日以海关总署令第143号公布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和撤销管理办法》同时废止。 |